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0일,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1. 13.) 상정,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현행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신고,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되고 있으며, 식사 제공은 조식에 한해 허용하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및 제86조의2제4호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가. 인구감소지역 한정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멸위험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계인구¹⁾ 유입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나.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모·시설 기준 특례

농어촌민박이 당초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농림지역 등에서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소규모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숙박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도입된 제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농어촌민박의 식사제공 특례

농어촌민박과 유사한 도시민박업의 경우 조식 이외 식사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농어촌민박은 일반음식점업과 달리 투숙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1)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특정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의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일, 학업, 관광, 문화 활동 등을 이유로 자주 방문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포함함.

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